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528 제출연월일: 2024. 9. 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제1항제3호)

소매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에서 '0.5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0.65퍼센트)'로 조정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안 제47 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수시부과 제도 신설(안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 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

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혈액"을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0.5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0.65퍼센트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사업자: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납부세액"을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으로,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납부세액"을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57조의2에 서"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1.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 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 액
-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제60조제1항제2호 중 "1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ㆍ 제4

63조제3항ㆍ제4항"으로,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

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 "제68조"를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68조의2제1항 후단 중 ""0.5퍼센트""를 ""0.5퍼센트"로, "2퍼센트"는 "1 퍼센트""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동물의 혈액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	대한 면세) ①
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	5
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과 <u>혈액</u>	<u>혈</u> 액(치료
	·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
	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 20. (생 략)	6. ~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
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	른 세액공제 등) ①
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	
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	
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 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 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저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

1. • 2. (현행과 같음)				
3				
J.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사업자: 발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0.5				
퍼센트(2026년 12월 31일				
까지는 0.65퍼센트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사업자: 발급금				
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				
트(2026년 12월 31일까지				
<u>는 1.3퍼센트로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2027년 12월 31일				

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 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 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 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 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 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②·③ (생 략)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략)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

	②・③ (현행과 같음)
제	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
	행과 같음)
	②
	<u>납부세액</u>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제57
	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은 공제한다)
	③

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 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 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 본법 1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 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 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

<u>「조세</u>
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
경감한 세
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
<u>과한 세액</u>
1. ~ 3. (현행과 같음)
4

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저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
세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현
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
한 세액
 세5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1.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 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 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 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 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 법」에 따라 징수한다.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에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 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

② (생략)

-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지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1. · 1의2. (생략)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합계액의 1퍼센트
 - ② ~ ⑩ (생 략)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저 세액) ① ~ ③ (생 략)
 -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
여야 할 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
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가산세) ①
1.·1의2. (현행과 같음)
2
<i></i>
<u>2퍼센트</u>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4

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 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 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 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 ⑦ (생 략)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 기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 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 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 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 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 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 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 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 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 부)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
 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 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1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
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66</u> 조제1항 본
<u>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u>
ゔト

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 경정과 징수) ① (생 략) 경정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 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 를 준용한다. ③ 삭 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 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 산세) ① ----· 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 1항 ·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 1호·제3호·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 퍼센트"는 "0.5퍼센트"로 본다. ----- "0.5퍼센트"로, "2퍼센

트"는 "1퍼센트"-----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O 지출: 0원, 수입: 14,045억원, 총비용: △14,045억원

(단위: 억원)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 익천) 연평균
구 분		2023	2020	2021	2020		11 /11	1.05
지출 			해	당	없	유		
	소 계(A)	_	-	-	_	-	-	_
수입	○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6)	Δ1	△1	△1	Δ1	△1	△5	△1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46)	2,166	2,888	2,888	2,888	2,888	13,718	2,74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47, 63)	△42	△56	△56	△14	-	△168	△42
	○ 수시부과 제도 신설(§57의2)		추	정	곤	란		
	○ 명의위장 사업자에대한 가산세율상향 조정(§60,68의2)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소 계(B)	2,223	2,931	2,931	2,973	2,987	14,045	2,801
총 비용(A-B)		△2,223	△2,931	△2,931	△2,973	△2,987	△14,045	△2,801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면세 대상에 치료 등 목적 동물혈액을 추가하여 세수 감소
2	제6조(신용키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전년도 공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으로 세수 증가
3	제47조, 제63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으로 세수 감소
4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수시부과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세수 증가
5	제60조, 제68조의2 (가산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으로 세수 증가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부합하는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4.12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①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6)
 - ㅇ 세수감: △5억원(지방소비세 제외)
 - '23.9~12월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하여 세수감 추계
- ②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46)
 - 이 세수증: 13,718억원(지방소비세 제외)
 - '22년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급가액 5억원 초과 사업자의 공제율 50% 하향 조정을 전제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세수감 추계
-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47,63)
 - ㅇ 세수감: △168억원(지방소비세 제외)
 - '22.2기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액(△28억원)이 '25~'27년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세수감 추계
- ④ 수시부과 제도 신설(§57의2)
 - ㅇ 세수증: 추정곤란
 - 신설 항목으로 향후 수시부과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 수, 세액 등 추정 곤란
- 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 60, 68의2)
 - ㅇ 세수증: 500억원(지방소비세 제외)
 - '21년 명의위장 가산세 추정치(69억원), '22년 명의위장 가산세 추정치(130억원)의 평균액(100억원)으로 연간 세수증가액을 계산하여 세수증 추계

IV. 부대의견

O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Ο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송유민	정호진	최진규	이용주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송유민	044-215-4326	youmin020@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 ○○기금						
□ 기타						
0			***************************************			
〈합 계〉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O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

IV. 부대의견

O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혐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Ⅵ.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송유민	정호진	최진규	이용주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송유민	044-215-4326	youmin020@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